

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(제2차 교육위원회) 2024. 10. 11.(금) 10:00

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차 운용 및 지원 조례안

교육 위원 회수 석전 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·운용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정범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: 2024년 10월 2일

O 회부일자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 이유

○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관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존 관사의 노후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자 중심의 주거지원 체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임차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교직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다.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라.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마.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사.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아.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 자.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제안 이유 검토

- 본 조례안은 기존의 관사 운영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, 노후화, 단체생활형 관사 구조 등에 따른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임차비를 지원하여 주거 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 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 임차지원기금 설치·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은 도내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인사 발령 후, 1달 이내에 발령 지의 주거를 마련해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, 특히 임용 후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 의원면직의 원인인 낮은 처우와 업무 부담뿐 만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발령으로 주택 임대를 위한 비용 마련 부담도 영향을 끼침
- O 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전지역에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를 원하는 공무원의 수에 비해 관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근 무지 거주의 어려움이 더해짐

<2022~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역별 관사 입주자 대기 현황>

지	역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진천	음성	단양	괴산 증평	소계
입주	2022	27	91	104	31	62	110	33	39	41	22	560
신청자	2023	7	297	132	42	65	102	49	20	41	27	782

	2024	6	200	145	33	58	94	44	22	40	24	666
	2022	27	22	16	6	42	67	4	5	40	5	234
관사 입주자	2023	7	68	16	36	43	58	4	3	40	8	283
	2024	6	46	18	33	43	58	7	4	40	5	260
입주 대기자	2022	0	69	88	25	20	43	29	34	1	17	326
	2023	0	229	116	6	22	44	45	17	1	19	499
	2024	0	154	127	0	15	36	37	18	0	19	406

- O 또한, 현재 제공되고 있는 관사는 단체 생활형 관사의 형태로 개인의 주거 패턴이 변화되어 개인형 관사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
-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LH 협약을 맺고 임차를 통해 임대아파트 지원을 하고 있음. 그러 나 충북 도내의 대부분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임대아파트 지 원의 어려움이 있음. 비슷한 지역적 환경의 강원도, 전라남도, 경 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설치하여 주거안정기 금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

O <타시도 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관련 조례>

연번	시·도	조 례 명	제·개정일
1	경북	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	2022.4.21. 일부개정 (1998.1.12. 제정)
2	전북	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	2021.10.28. 일부개정 (1994.7.11. 제정)
3	강원	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2024.6.7. (제정)

○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 전체 지역 발령으로 이동이 많은 교육공무원 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의 업무의 안정성 확보와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·운 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, 존속기한,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과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, 회계관계공무에 관한 사항,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)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」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
- O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, 기금운용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함
- O 안 제5조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,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
- O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함을 정하고 있음
- O 안 제7조(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에서는 「지 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「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대신하기로 정함

- O 안 제9조에서는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·군지역 내 무주택 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,
- O 안 제10조에서는 1인당 지원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, 매년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

다. 종합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」 제25조¹)에서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,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²)에서는 농어촌 교직원에게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의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관사의 안정적 공급의 부족과 기존 관사의 노후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어려움이 있고,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 증진과 근무지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후생복지 제도로서 입법의 취지,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

O 또한, '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, 과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에 비추어

^{1) 1)} 제25조(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)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 3. 26.>

^{1.} 교원(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, 방범창,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

^{2.}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

^{3.}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

^{4.} 교원의 성별 현황

^{5.}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²⁾ **2) 제26조(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,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,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0. 7. 23.]

볼 때,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

○ 다만, 제9조에서 지원대상이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·군지역 내 무주 택자로서 근무지의 관사 및 주택 수급의 정도에 따라 경력별, 지역별, 등록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등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며, 지원금의 안정적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규정 해야함